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354 호    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09년 4월 일<br>(제 279회) |

**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정윤숙 의원외 7인   |
| 발의연월일 | 2009년 4월 15일 |

#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운숙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54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09. 4. 15.

제 출 자 : 정운숙, 임 현, 최미애  
김광수, 이범윤, 이종호,  
최광옥, 최광옥,

## 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의 개정 에 따른  
관련 법률을 개정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 
기준」 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신청대상자를 독립·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확대(안 제4조)
- 상위 관계 법령 근거 조항 정비 및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 
위한 정비기준」 에 따라 용어정비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매점 및”을 “매점과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1. 「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본청과 직속기관, 사업소

제3조 본문 중 “충청북도지사 또는”을 “도지사,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장애인복

지법」 제32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 부모 가족
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

제5조 제목 중 “우선허가 및”을 “우선허가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일반인에”를 “일반인보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“경우의”를 “경우”로 하며,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거주 및”을 “거주하거나”로 하며, “배우자 및”을 “배우자와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소홀히한”을 “소홀히 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생시”를 “발생 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”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부과·징수의 기준 및”을 “부과·징수기준과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“공유재산관리규정에”를 “「공유재산관리규정」에”로 한다.

2조제2항, 제3조 본문, 제4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3항 및 제8조 본문 중 “매점 및”을 각각 “매점과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“각호의 1과”를 각각 “각 호의 어느 하나와”로 하 한다.

제2조, 제4조, 제5 조, 제6조, 제7 조 각 항의 번호와 조문은 각각 띄어 쓴다.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며,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**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(제4조 관련)**

|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    |
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신청자  | 주소   |                   |  |    |
| 인적사항   | 성명   |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장애등급<br>(노인, 한부모가족, 독립·국가유공자 및 유가족)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신청내용   | 신청장소 |                   |  |    |
|  | 신청대상 | 매점                | 자동판매기  | 기타 |
|  | 신청내용 | 매점<br>자동판매기<br>기타 | 개소( m <sup>2</sup> )<br>개소(커피 대, 음료 대)<br>개소 |    |
| <p>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제4조의<br/>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하</p>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    |
| <p>※ 구비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(해당자)</li> <li>2. 우선허가 증명서류 1부</li> <li>3. 독립·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(유족자에 한함) 1부.</li> </ol> <p>*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같음</p>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    |

## [별 표]

**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(제5조 관련)**

| 순위 |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5세 이상노인 및 한부모가족  | 독립·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  | 장애등급이 1~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|
| 2  | 장애등급이 3~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| 미과세 대상자           | 미과세 대상자           |
| 3  | 장애등급이 5~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가. 위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나.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,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, 세대원 수가 많은 자,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, 노인복지법 및 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|
| <p>제2조(적용의 범위)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</li> <li>2.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</li> <li>3. 기타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</li> </ol> <p>②공공시설내의 매점(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)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| <p>제2조(적용의 범위)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 본청과 직속기관, 사업소</li> <li>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</li> <li>3. 그 밖에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</li> </ol> <p>② 공공시설내의 매점(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)과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|
| <p>제3조(사전공고) 충청북도지사 또는 도 소속기관의 장과 도 지방공기업의 장(이하 "설치자"라 한다)은 공</p>   | <p>제3조(사전공고) <u>도지사</u>, 도 소속기관의 장과 도 지방공기업의 장(이하 "설치자"라 한다)은 공공시설내</p>   |

| 현행  | 개정안   |
|---|---|
| <p>공시설내에 <u>매점 및 자동판매기</u>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1월전에 이를 공보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신청자격 및 구비서류) ①공공 시설내에 <u>매점 및 자동판매기</u>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</li> <li>2.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</li> <li>3. 모자복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</li> </ol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<u>매점 및 자동판매기</u>의 설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우선허가 및 계약기간) ①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<u>일반인에</u> 우선하여 장</p> | <p>에 <u>매점과</u>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1월전에 이를 공보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신청자격 및 구비서류) ①공공 시설내에 <u>매점과</u>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<u>각 호의 어느 하나와</u>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</li> <li>2. 「<u>노인복지법</u>」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</li> <li>3. 「<u>한부모가족지원법</u>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 부모 가족</li> <li>4. 「<u>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</li> <li>5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6조의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</li> </ol> <p>② <u>매점과</u>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우선허가와 계약기간) ①설치자는 <u>제4조의에</u>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<u>일반인보다</u> 우선하여</p> |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.<br/> <u>②2인 이상</u>이 신청한 <u>경우</u>의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</p>   | <p>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.<br/> <u>② 2명 이상</u>이 신청한 <u>경우</u>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</p>  |
| <p>제6조(사업자의 의무) <u>①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</u> 등은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<br/> <u>②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</u> 관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은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(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있는 배우자 및 동일한 조건의 직계 존·비속에 한한다)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             | <p>제6조(사업자의 의무) <u>① 매점과</u>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은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<br/> <u>②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</u> 관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은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(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있는 배우자 및 동일한 조건의 직계 존·비속에 한한다)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                  |
| <p>제7조(계약해지) <u>①</u>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</li> <li>2. 설치계약을 한 자가 <u>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한</u> 경우</li> <li>3.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</li> <li>4.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</li> </ol> | <p>제7조(계약해지) <u>①</u>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</li> <li>2. 설치계약을 한 자가 <u>매점과</u>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<u>소홀히 한</u> 경우</li> <li>3.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</li> <li>4.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</li> </ol> |

| 현행   | 개정안  |
|--|--|
| <p>발생한 경우</p> <p>② <u>계약해지 사유 발생시</u> 계약체결자에 대해 최소한 1월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제1항의 규정</u>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<u>매점</u>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없다.</p> <p>제8조(사용료 등) <u>매점</u>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<u>부과·징수의 기준 및 방법</u>에 관하여는 <u>당해 기관의 공유재산관리 규정</u>에 의한다.</p> | <p>발생한 경우</p> <p>② <u>계약해지 사유 발생시</u> 계약체결자에 대해 최소한 1월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b>제1항에</b>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<b>매점과</b>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없다.</p> <p>제8조(사용료 등) <b>매점과</b>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<b>부과·징수기준과</b> 방법에 관하여는 <b>해당</b> 기관의 「<b>공유재산관리 규정</b>」에 의한다.</p> |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장애인복지법

**제32조 (장애인 등록)** ①장애인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(이하 "등록증"이라 한다)을 내주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**제42조 (생업 지원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□ 노인복지법

**제25조 (생업지원)*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### □ 한부모가족지원법

**제4조 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2.29>

1. "모" 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유기)된 자

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
다. 미혼자{ 사실혼(사실혼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
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
2. 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

**제15조 (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)*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07.10.17]

## □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

**제6조 (등록 및 결정)** ①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"보훈심사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. 다만,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08.3.28]

**제16조의2 (생업지원)**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

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## 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**제6조 (등록 및 결정)** ①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,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,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,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.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,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2.6>

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,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"보훈심사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68조의2 (생업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,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